

	<h1 style="margin: 0;">예비군중대운영규정</h1>	규정번호	KTC-G-07	1/3
		제정일자	2013.03.07	
		개정일자		
		관리부서	예비군중대	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(이하 ‘법’ 이라 한다.),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(이하 ‘령’ 이라 한다.),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(이하 ‘규칙’ 이라 한다.)에 의거 강원관광대학교 직장예비군(이하 ‘예비군’ 이라 한다.)의 조직, 편성,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임무) 예비군은 법 제2조에 의거 전시,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부대 편성을 위한 동원이나 학교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임무를 가진다.

제 2 장 조 직

제 3 조(편제) ① 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예비군은 중대로 편성한다.

② 예비군중대는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편성하며, 제대편성은 학과의 학년단위로 편성 하되, 교직원제대는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별도 편성한다.

③ 중대본부는 중대장 1명, 사무원 1명 으로 편성한다.

제 4 조(편성) 예비군은 예비역인 교직원 및 학생으로 편성한다. 다만, 교직원은 발령 일, 학생은 재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대상이 된다.

제 3 장 자 원 관 리

제 5 조(업무처리 및 협조) ① 학적담당자는 예비군대상 학생예비군이 입학, 재입학, 휴(복)학 제적 등의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예비군중대에서 협조를 얻어 관련서류를 조치토록 한다.

② 각 학과에서는 훈련통지서 전달 및 수령증 회수, 기타 연락업무 등에 협조하여야

	<h1>예비군중대운영규정</h1>	규정번호	KTC-G-07	2/3
		제정일자	2013.03.07	
		개정일자		
		관리부서	예비군중대	

한다.

제 6 조 (자원변동 통보) 예비군의 자원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처리후 즉시 그 변동 사유를 예비군중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교원 신규임용 및 면직
2. 직원 신규임용 및 면직
3. 학생들의 학적 변동(입학, 재입학, 휴학, 복학, 제적, 졸업)

제 4 장 교 육 훈 련

제 7 조(교육훈련) ①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는 연간 8시간의 방침보류자훈련을 받아야 한다. 단, 교직원예비군대상자는 연차에 맞는 훈련을 실시한다.

②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이전에 지역 및 직장에서 예비군 교육훈련에 불참한 자의 보충교육시간은 육군본부 예비군 교육훈련지시의 보충훈련 규정을 적용받는다.

③ 본인에게 질병, 구속, 관혼상제, 천재지변, 해외출국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통지서의 전달) 소집통지서는 훈련처리 지침에 의거 훈련홍보, 통지서 전달등의 방법으로 전달 한다.

제 9 조 (해외출국 및 귀국) ①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180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,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.

제 5 장 운 영

제 10 조(예비군 운영)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의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실무편람 규정에 준한다.



예비군중대운영규정

규정번호	KTC-G-07	3/3
제정일자	2013.03.07	
개정일자		
관리부서	예비군중대	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7일 부터 시행한다.